긴 급 사 유 서

1. 사 업 명 :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행사대행용역

2. 추진근거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6.22.,2020.5.1.>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1의 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·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⑤ 제43조에 따른 **협상에 의한 계약**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**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**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**10일 전까지 공고**할 수 있다. <신설 2006. 5. 25., 2015. 6. 22., 2018. 12. 4.>

1. **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3. 삭제 <2015.6.22.>

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
<제4조(입찰공고)>

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**긴급을 요하는 경우**,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**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**할 수 있다.

3. 사 유

○ "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"에 따라 '22.12.31.까지 모든 경쟁 입찰은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하므로 본 건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행사대행 용역 입찰도 긴급입찰로 진행

○ 본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로서 행사 참여자 확정, 행사장 디자인, 해외 연사 스케줄 관리 등 본 행사에 앞선 사전 준비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최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. 이에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
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